

불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충분해!"



# 충청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교내에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도내 청년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 사업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다. 신청기간 : 2024. 2. 26.~2025. 2. 25.(1년) / 지급기간 : ~2026. 12. 31.  
라.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붙임 1. 홍보자료(인쇄물 별도 발송) 1부.

2. 배부표 1부. 끝.



수신자 나사렛대학교총장, 남서울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백석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연암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공주교육대학교총장, 아주자동차대학교총장, 선문대학교총장, 순천향대학교총장, 호서대학교총장, 유원대학교총장, 한서대학교총장, 건양대학교총장, 금강대학교총장, 신성대학교총장, 세한대학교총장, 중부대학교총장, 청운대학교총장, 혜전대학교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주무관

지은희

청년자립팀장

고상옥

정책관

전결 2024. 10. 10.

남성연

협조자 주무관

노현호

시행 청년정책관-6741

(2024. 10. 10.)

접수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987

팩스번호 041-635-3494

/ juhi0822@korea.kr

/ 대국민 공개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24. 2. 23일부터 운영 예정)

**Q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대상 연령(19세 ~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 '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 신청 및 접수

# Q&A

Q6

###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Q7

###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 확인

Q8

###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A

〈참고〉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p.36 ~ p.39) 확인

예시 1 )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예시 3 )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 미적용

예시 4 ) 제 나이는 31세(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 미적용

Q9

###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10****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해당인가요?****A**

- 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Q11****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Q12****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A**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❸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신청 및 접수

# Q & A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1, 2, 3)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하숙집의 경우 :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의 경우 :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 회사 기숙사의 경우 : 임대차계약(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가 임차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의 예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참조)
- 사업장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대학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의 경우, 월세금액 반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세금액 : 전체 계약금액/계약기간
- 예시 > 대학기숙사에 4개월동안 거주하고, 120만원을 냈다면 월세는  $120/4$ 로 계산하여 30만원으로 인정
- 기숙사 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고 이 시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기숙사를 들어간 후, 주소지 변경을 한다면 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및 동일 주소지 계약내용 변경(월세, 보증금 변동)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기술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A**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6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A**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총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1 ) -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 10만원 지원

-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Q15****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A**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